

별첨 1:

#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

검토 항목	대상 여부 (✓)	적용 여부 (✓)	대상사업 및 내용	관련근거
1. SW분리발주 실시	X	X	- 발주금액(추정가격+부가세) 5억원 이상사업으로, GS인증, 행정업무용SW, CC인증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제품, NEP 인증, NET인증, 조달등록제품(조달구입의무)	- SW산업 진흥법 제20조(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) 제2항 등 관련법령 - 분리발주 대상 SW(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-184호)
2.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	O	O	-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: 80억원이상 -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: 40억원이상 ※ 중견기업이 대기업된지 5년 미경과시 20억원 이상사업 참여 가능 - 일괄발주시 각 사업금액 적용 - 상호출자제한 관련 문구 삽입	SW산업 진흥법 제24조2(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) 등 관련법령 SW산업 진흥법 제24조2(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) 제2항
3.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	O	O	-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에 한함	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(발주준비)
4. 중소기업자 우선조달	O	O	- 추정가격 1억 이상 2.3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 ·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 -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·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 경쟁 ※ 단,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의한 '직접생산확인' 제품(용역)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	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(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)
5. 하도급 관련 문구	O	O	- 하도급 사전승인 - 하도급대금지급비율 명시 -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-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- 하도급 현황보고	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(하도급의 승인) 등 관련법령
6.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	O	O		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지침 제41조(작업장소 등) 등 관련법령
7. 지식재산권 관련 문구	O	O	- 상호협의를 경우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공동귀속 명시할 것.	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지침 제60조(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) 등 관련법령
7-1 지식재산권 공동귀속	O	O		
7-2 제3자의 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	O	O	- 본 사업 추진시 제3자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하며, 사업 종료후에도 역시 배상해야 함	
8. 하자담보 1년이내(또는 1년간) 명시	O	O		SW산업 진흥법 제20조4(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)등 관련법령
9. 특정규격 또는 기술지원확약서	X	X	- 특정규격 명시할 경우 "특정제품 또는 특정기술 제공사와이 협약체결하여 공고할 것" - 특정규격 명시 금지 - 특정규격 필요한 경우 사전협약서 공개 - 기술지원확약서 계약시 제출	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 제2장(제한경쟁입찰의 운용)
10.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	O	O		SW산업 진흥법 제20조(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) 제1항
10-1. 기술능력 평가비중 90% 명시	O	O	-제외가능사업 : 추정가격 중 HW비중이 50%이상 사업, 추정가격 1억미만인 개발사업, 기타 기관장 판단하에	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지침 제18조(평가비중)
11.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	O	O		SW기술성평가기준(고시)
12. 제안서 보상 명시	O	O	- 총 사업예산 20억원 이상 사업(단, 유지보수사업, 단순하드웨어구축사업, DB구축사업,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 제외)	SW산업 진흥법 제21조(SW사업 제안서 보상) 등 관련법령
13.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- 무상유지보수 등 금지	O	O	- 모든 정보화사업	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,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(하자보수 등) 등 관련법령
14.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	O	O	- 모든 정보화사업	SW산업 진흥법 제20조(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) 제3항 등 관련법령
15. SW사업 적정기간 산정	O	O	- SW개발을 포함한 사업	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(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),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(고시) 제4조의2
16. 민원제안 채널 기능 포함여부	X	X	- 홈페이지(웹서비스), 모바일(웹, 앱) 등 대민용 시스템에 해당하며, 서울시 과 및 담당관, 사업소가 대상임	시민봉사담당관-8876 『민원제안성 채널 추가하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협조 요청』 (2014.3.24.)호